

기안용지

문류기호 문서번호	주개30321-418	(전화 : 731-6393 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87. 11.		
보조 기관	건설관리과장 전결	행정과상 협조통제관 법무담당관 <b>김사필</b> (고시안심사) 지적과장 <b>김</b>	문서 통제
	주택개발과장		
	개발2과장		
기안제임자	심관종(최종인)	발인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 시 장		1987. 11. 24 서울특별시
제목	전농 제3 주택개발개발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 승인 및		

(제 1 안) 내부결재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 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건고시 제616호(86.12.27) 및 서고시 제799호(87.11.16)로 구역변경결정된 전농 제3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(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)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1항(권한위임)의 규정에 의거 별첨도면과 같이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(고시) 및 제9조4항(도면의 종류등)의 규정에 의거 별안(2안)과 같이 그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전농 제3구역 지형도 1부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의뢰

1. 전농 제3 주택개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의

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의뢰  
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사본 2부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개발과장

제목 : 전농 제3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 승인및 고시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제616호  
(85.12.27)및 서고시 제799호(87.11.12)로 구역변경결정된 전농 제3 주택개  
발재개발 구역에 대하여

2.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 
법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및 고시하였기 도시계획법  
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내용을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안 및 도면 각1부

(제 4 안)

수신 : 동대문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 (도시정비과장)

제목 : 전농 3 주택개발재개발구역 지적 승인 및 고시통보

1. 귀구관내 전농 제3 주택개발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  
에 의거 지적 승인및 고시하였기 그내용을 통보한다



2. 도시계획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부 : 고시안 및 도면 각2부

(계 5 안) -203

수신 : 수신처참조

발신 : 과장

제목 : 전농 제3 주택개발제한개발구역 . 지적 승인및 고시통보

1. 전농 제3 주택개발제한개발구역을 별첨과 같이 지적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, 지적과



고 시 안  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고시번호	1987. 11. 23	제 호
담당자	김영환	담당관

"전농 제3 주택개량재개발구역변경 (일부해제)에 따른 지적 승인"

1. 건설부 고시 제470호(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16 (86.12.27) 및 <sup>1987.11.23</sup> ~~국~~고시 제799호(87.11.12)로 구역변경결정된 전농 제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7. 11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 승인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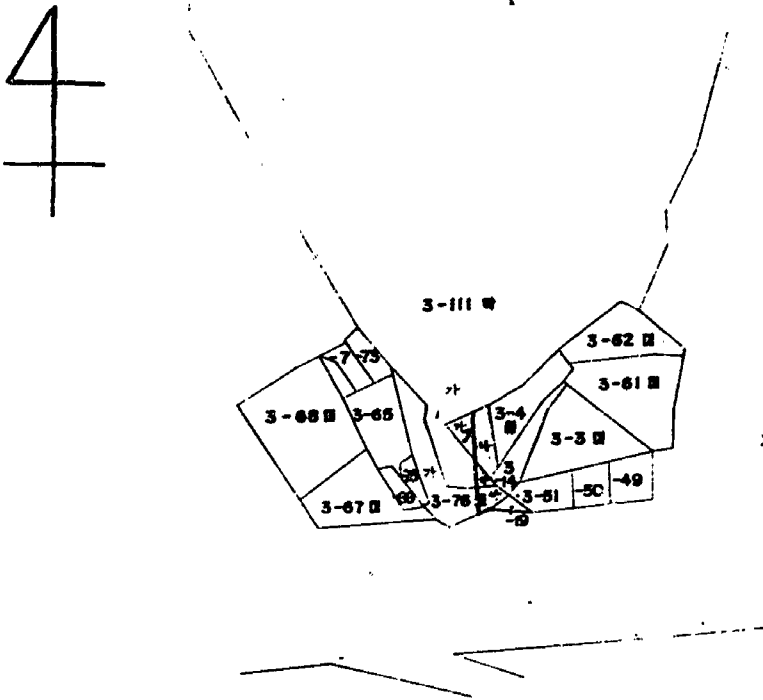
구역명	위 치	면 적 (m <sup>2</sup> )	비 고
전농3	동대문구 전농동 8번지일대	95,590	일부해제

나. 도면 : 서울특별시청 주택개량과와 동대문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

등록번호 1092 388

분할설계정도

토지소재	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전농 동 3-11 번지 6 필	속적	1.200 분지1
측량	1987 년 11 월 21 일측량자	지적기사	지적회사1급 김근



면적

부호	면적
3-11가	25.0
나	44.0
계	69.0
3-76가	151.0
나	18.0
계	169.0
3-111	22430.0
나	7.0
계	22437.0

(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)

서기1987 년 11 월 21 일

작성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적      사      지적회사2급      박정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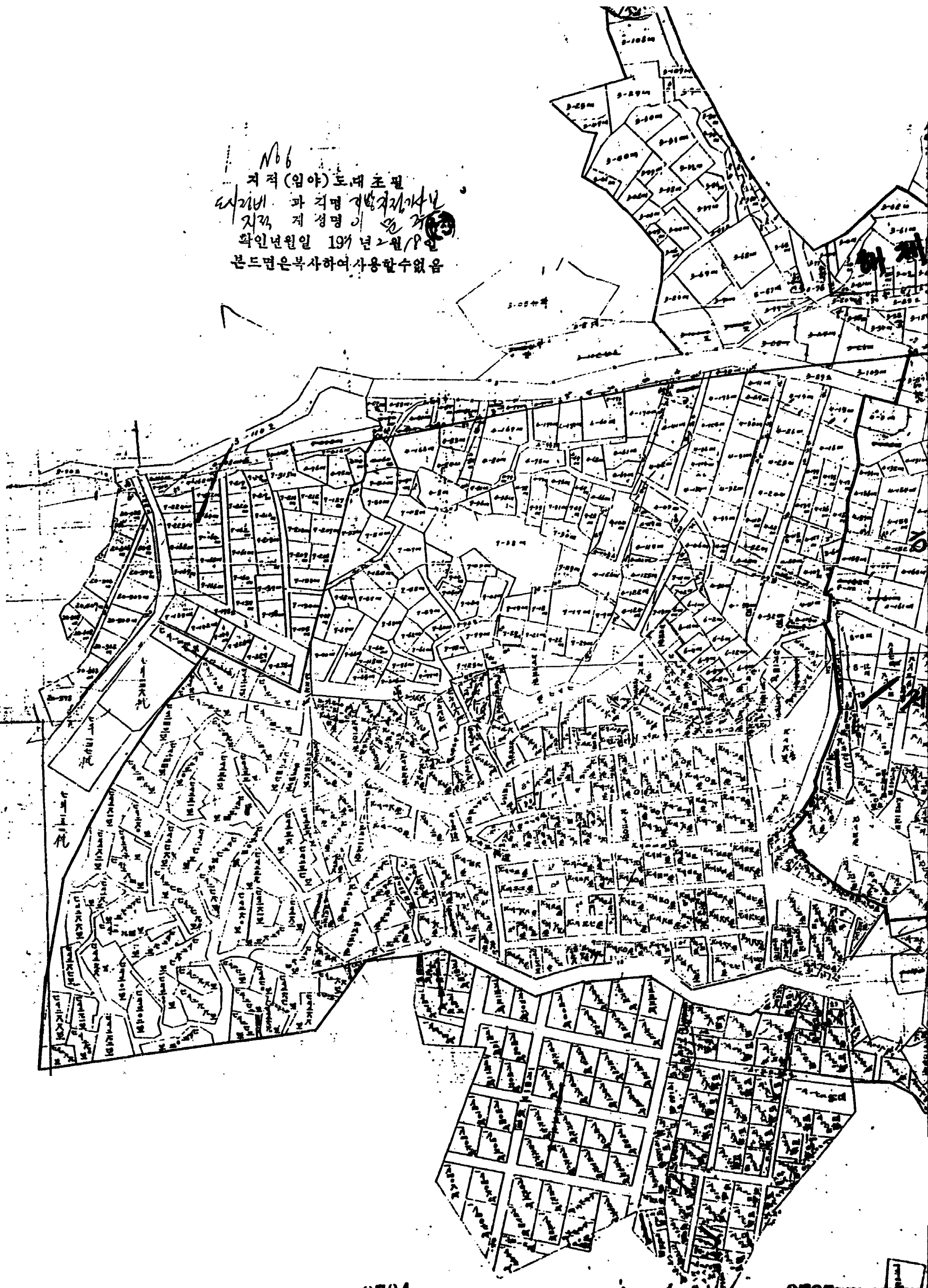
제당법인 대한지적공사

서울특별시지사 동대문구 출장

2793



No 6  
지적(임야)도대초필  
사리비 과 각명 개항지정가산  
지각 제정명 이  
확인년월일 1971년 2월 18일  
본도면은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음



No 6  
지적(임야)도네초필  
시가지 과 각명 개발지침가산  
지적 제정명이  
확인년월일 1971년 2월 19일  
본도면은 복사하여 사용할수없음

